CEO가 알아야 할 2023년 주요 개정 세법

NEWS LETTER for CEO



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%p 인하

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%포인트씩 인하되었습니다. 당초 개정안에는 과세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,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표준 5억까지 10%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, 최종 확정안은 과세 구간별 1%p인하로 결정되었습니다.

과세표준	세율		누진공제
	개정 전	개정 후	구인O세 -
2억원 이하	10%	9%	-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	20%	19%	20,000,000
2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	22%	21%	420,000,000
3,000억원 초과	25%	24%	9,420,000,000

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_소득세 인하 효과

8.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소득세 부담율이 종전 대비 낮아졌습니다.

과세	과세표준		
개정 전	개정 후	세율	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	1,400만원 이하	6%	-
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	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	15%	1,260,000
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	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	24%	5,760,000
8,800만원~ 1.5억원 이하	8,800만원 ~ 1억 5천만원 이하	35%	15,440,000
1억 5천만원 ~ 3억원 이하	1억 5천만원 ~ 3억원 이하	38%	19,940,000
3억원 ~ 5억원 이하	3억원 ~ 5억원 이하	40%	25,940,000
5억원 ~ 10억원 이하	5억원 ~ 10억원 이하	42%	35,940,000
10억원 초과	10억원 초과	45%	65,940,000

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_퇴직소득세 인하 효과

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율이 종전 대비 5~6% 가량 낮아졌습니다.

근속년수	공제	I액
근속한구	개정 전	개정 후
5년 이하	30만원 x 근속연수	100만원 x 근속연수
5년 초과 10년 이하	150만원 + 50만원 x (근속연수-5년)	500만원 + 200만원 x (근속연수-5년)
10년 초과 20년 이하	400만원 + 80만원 x (근속연수-10년)	1,500만원 + 250만원 x (근속연수-10년)
20년 초과	1,200만원 + 120만원 x (근속연수-20년)	4,000만원 + 300만원 x (근속연수-20년)

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

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시 종전에는 연간 행사이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, 올해부터는 연간 2억원(누적한도 5억원)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행사이익 비과세 한도	연간 5천만원	연간 2억원 (누적한도 5억원 신설)

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_납세편의 제고 (소비성 서비스업 제외)

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'통합고용세액공제'를 신설했습니다. 2023년은 종전규정과 개정규정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.

개정 전

개정 후

1 고용증대 세액공제 (모든 기업)

: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

	공제액(단위: 만원)			
구분	중소(3년)		중견	대기업
	수도권	지방	(3년)	(2년)
상시근로자	700	770	450	_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 등	1,100	1,200	800	400

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(중소)

: 고용증가인원소(2년)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(일반 50%, 청년·경력단절여성 100%)

• 청년 범위(1,2): 만 15~29세

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(중소, 중견)

: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(2년 지원)

x 공제율(중소 30%, 중견 15%)

<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>

■ 기본공제

: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

	공제액(E		단위: 만원)	
구분	중소(3년)		중견	대기업
	수도권	지방	(3년)	(2년)
상시근로자	850	950	450	-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 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

■ 청년 범위 : 만 15~34세



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(중소, 중견)

: 정규직 전환 인원(1년 지원)

x 공제액(중소 1,000, 중견 700)

5 육**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** (중소, 중견)

: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(1년 지원)

x 공제율(중소 30%, 중견 15%)

■ 추가공제 : 인원수 x 2인당 세액공제액(1년 지원)

ᄀᆸ	공제액(단	난위: 만원)
구분	중소	중견
정규직 전환자, 육아휴직 복귀자	1,300	900

6

가업상속공제_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, 사후관리 완화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적용대상	중소기업 중견기업 (매출액 4천억원 미만)	중소기업 중견기업 (매출액 5천억원 미만)
공제한도	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: 200억원 20년 이상 ~ 30년 미만: 300억원 30년 이상: 500억원	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~ 20년 미만: 400억원 20년 이상 ~ 30년 미만: 600억원 30년 이상: 1,000억원
피상속인 지분요건	최대주주 & 지분 50% 이상 (상장법인 3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	최대주주 & 지분 40% 이상 (상장법인 2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
사후관리기간	7년	5년
업종변경범위	중분류 내 변경 허용	대분류 내 변경 허용
고용유지의무	 (매년) 정규직 근로자수 8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% 이상 (7년 통산) 정규직 근로자수 100%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% 이상 	① <삭제> ② (5년 통산) 100% → <mark>90%</mark>
자산유지의무	가업용 자산의 20% (5년내 10%) 이상 처분 제한	20%(5년 내 10%) → 40%

7

가업승계 증여세 특례_적용대상 및 과세특례 한도 확대, 사후관리 완화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적용대상	중소기업 중견기업 (매출액 4천억원 미만)	중소기업 중견기업 (매출액 <mark>5천억원</mark> 미만)
증여공제	5억원	10억원
세율	30억 이하: 10% 30억 이상 ~ 100억: 20%	60억 이하: 10% 60억 이상 ~ 600억*: 20% (*한도: 10년 이상 300억, 20년 이상 400억, 30년 이상 600억)
대표이사 취임	5년 이내	3년 이내
사후관리기간	7년	5년
업종변경범위	중분류 내 변경 허용	대분류 내 변경 허용

8

창업자금 증여세 특례_과세특례 한도 확대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세율	30억원 이하: 10% 30억원 이상: 정상세율 (10인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)	50억원 이하 : 10% 50억원 이상: 정상세율 (10인 이상 신규고용시 100억원 한도)



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

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(상속)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(증여)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납부유예 방식은 상속인이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상속세 금액의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**완화된 사후관리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도 미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**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구	분	가업상속공제	납부유예방식(신설)
적용	대상	중소 · 중견(매출액 5천억원 미만)기업	중소기업
적용	혜택	상속재산 공제(이월과세 적용)	상속인이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상속세 금액 납부유예
한.	도	300억원 ~ 600억원	(없음)
사후관	리 기간	5년	(좌동)
	업종유지	대분류 내 변경 허용	(면제)
사후관리	고용유지	5년 평균 90%	5년 평균 70%
_	지분유지	상속받은 지분 유지	(좌동)

10

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

2023년부터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했으며,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액이 늘었습니다.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일반	6억원	9억원
1세대 1주택자	11억원	12억원



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,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

2023년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입니다.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1.2~6%의 세율로 중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0.5~2.7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도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
과세표준	개정 전		개정 후
	일반	다주택	川ら デ
3억원 이하	0.6%	1.2%	0.5%
3~6억원	0.8%	1.6%	0.7%
6~12억원	1.2%	2.2%	1.0%
12~25억원	1.6%	3.6%	1.3%
25~50억원	1.6%	3.6%	1.5%
50~94억원	2.2%	5.0%	2.0%
94억원 초과	3.0%	6.0%	2.7%
법인	3.0%	6.0%	2.7%